한이음 ICT멘토링 운영지침

제정 2006.02.28. 개정 2006.06.22. 개정 2008.03.06. 개정 2010.04.01. 개정 2011.03.01. 개정 2012.02.27. 개정 2013.07.15. 개정 2014.06.20. 개정 2015.05.11. 개정 2016.09.01. 개정 2017.03.02. 개정 2018.01.26. 개정 2019.05.13. 개정 2020.03.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비로 지원하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 내 ICT멘토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이음 ICT멘토링(이하 "멘토링"이라 한다)"이란 한이음멘토, 멘티가 팀을 구성하여 실무기술이 반영된 산학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운영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지원하여 멘 토링을 운영하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말한다.
- 3. "한이음멘토(이하 "멘토"라 한다)"란 멘토링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산업체 ICT전무가를 말한다.

- 4. "지도교수" 란 학생지도, 프로젝트 진도 및 성과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학 교수를 말하다.
- 5. "멘티" 란 국내 대학생으로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6. "멘토수당"이란 멘토링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멘토에게 지원하는 활동수당을 막하다.
- 7. "한이음 사이트(www.hanium.or.kr)" 란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말한다.
- 8. "프로젝트 기간"이란 프로젝트 개설심의 결과, 승인 시점부터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제 2 장 멘토 위촉 및 지원

- 제3조(자격요건) ① 멘토는 산업체 ICT 관련 직무에 종사 중이며, 관련 직종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ICT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멘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승인 받아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멘토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이음 사이트에 가입한 후 멘토 신청을 해야 하며 제3조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가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승인 및 위촉) ① 운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 받고 제12조에 따라 개설 승인된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멘토활동)** ① 멘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지도에 필요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멘토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자문 및 코칭
- 2. 멘토링 활동보고서 작성
- 제7조(멘토수당)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한 멘토에게 최대 5건(한이음·프로보노·이브와 ICT멘토링 전체에서 5건)까지 멘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멘토수당은 프로젝트 기간에 한해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③ 멘토수당은 기본활동수당과 심화활동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지급된다.

< 멘토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기본활동수당	프로젝트 기간(개월) (당해연도 프로젝트 종료까지 완료한 프로젝트 최대 5건까지) - 프로젝트 기간 내 2회 이상 오프라인 미팅 권고	월 18만원 이상/건 (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심화활동수당	오프라인 미팅 3회부터 횟수 당 지급(최대 5회까지)	10만원 내외/회

④ 멘토는 운영기관이 공지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프로젝트 수행

- 제8조(프로젝트 공고) ① 멘토, 지도교수, 멘티는 개발 프로젝트¹⁾를 기획하여 한이음 사이트에 공고할 수 있다.
- ② 프로젝트 공고는 '[서식1] 한이음 ICT멘토링 프로젝트 개요서' 양식에 따라 하이음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 신청) 프로젝트 참여 신청은 멘토, 지도교수, 멘티 누구나 가능하다.

1) '개발' 프로젝트란 프로그램, 앱(APP) 등 소프트웨어개발 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하드웨어개발을 포함한 '실제 구현'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 제10조(프로젝트 팀 구성) ① 프로젝트 공고자는 제9조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 할 수 있다.
 - ② 프로젝트 팀은 멘토 1명과 멘티 팀(최소 3명 최대 5명의 멘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의 참여도 가능하다.
- 제11조(프로젝트 개설신청) ① 제8조의 공고자는 팀 구성 완료 후 프로젝트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자가 멘티인 경우라도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권 한과 책임은 멘토에게 있다.
- ② 제1항의 개설 신청 시 '[서식2] 한이음 IC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멘토의 재직증명서 및 멘티 전원의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를 제출하여 야 하다.
- **제12조(프로젝트 개설심의)** ① 제11조에 따라 개설신청한 팀에 대해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개설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개설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프로젝트 수행) ① 멘토는 한이음·프로보노·이브와 ICT멘토링 내에서 최대 5건, 멘티는 최대 3건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멘토는 프로젝트 기간 중 한이음 사이트에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 ③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등 지원사항은 한이음 ICT멘토링 지원제도 가이드를 따른다.
- 제14조(프로젝트 중간평가) ①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 프로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진행 정도가 미진한 프로젝트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팀에서 제출한 '[서식3] 한이음 ICT멘토링 중간보고서'를 기본으로 평가 하되 필요시 타 활동을 고려한다.
- ③ 중간평가를 통해 중단되는 경우라도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중

단시점까지의 멘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프로젝트 변경) ① 프로젝트 수행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제16조(프로젝트 완료) 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완료는 사무국 지정일(당해 연도 11월 중순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멘티는 프로젝트 완료일 이전까지 '[서식4] 한이음 ICT멘토링 결과보고 서'를 하이음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멘토는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결과보고서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 'ICT멘토링 수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프로젝트 중단) ① 운영기관은 참여자가 멘토링 후 최종결과보고서 미등록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 완료가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고,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 ② 제15조에 따른 승인 없이 프로젝트 수행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 한 프로젝트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③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운영기관은 팀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멘토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자의 차기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18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의 귀속은 참여자에 한하며 귀속여부는 참여자 간의 혐의를 통해 정한다. 단.

-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에 참여자 전원이 포함 되어야 하다
- ② 성과물의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멘토링운영 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 0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ICT메토링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준수의무) ① ICT멘토링 참여자(멘토, 멘티, 지도교수)는 활동함에 있어 본 제도의 목적에 따라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참여자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수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은 본 지침에서 정한 이행사항 위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멘토 수당 및 멘티 지원 금액 환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만족도, 취업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조 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21조(준용 규정 등) ①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 ② 본 지침의 변경 및 해석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부 칙 <2006.02.28.>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6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2.>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06.>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4.0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3.0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가주한다.

부 칙 <2013.07.15.>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06.20.>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 2014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다.

부 칙 <2015.05.1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 2015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6.09.0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02.>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29.>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13.>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5.>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